

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

(앞쪽)

허가번호	호		
허가 받는 자	성명(기관명)		
	주소		
대상 문화유산	종류	명칭	
	규격	수량	
허가사항	개요		
	반출국(장소)		
	당초 반출기간		변경 반출기간
	반출사유		
허가조건			

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유산청장 직인

유의사항

-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7항(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나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다.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국가유산청장은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·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.
-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.
-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8호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해당 신고서의 [허가번호]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[허가번호]를 작성해야 합니다.
 - ※ 신고기간 경과 시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

명	칭		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
수	량		
규	격		
소	유	자	
보	관	장	
비	고		
명	칭		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
수	량		
규	격		
소	유	자	
보	관	장	
비	고		
명	칭		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
수	량		
규	격		
소	유	자	
보	관	장	
비	고		
명	칭		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
수	량		
규	격		
소	유	자	
보	관	장	
비	고		